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동구의회보

2011_ vol. 36 www.namdong.go.kr/ndCouncil





소래포구의 아침

글 | 月波 차용길

은빛물결 파닥이는 비릿한 아침이 열리면 팽이갈매기 그리움
물고 날아드는데 협궤열차 다니던 철길은 그 시린 역사를
아는지 모르는지 액자에 담겨 구청로비에 걸려 있고 배고팠을
역사(驛舍)는 그 자리에 웅크리고 앉아 일어설 줄을 모른다.
배부른 고깃배 한 가득 토해놓고 떠나간 포구엔 도떼기
시장이 되는데 밤새 나뒹굴었을 사랑과 우정 슬픔을 빗질
하는 사내의 등 뒤로 새우등 같은 햇살이 비치고 함지박 가득
출렁이는 바다엔 고동이 운다.

구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동구의회보

contents

발행일 2011년 1월(제36호) 발행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Tel. 032. 453. 5030 Fax. 032. 453. 5029 디자인 다우컴 Tel. 032. 432. 6891
남동구의회보는 인터넷 <http://namdong.go.kr/ndCouncil>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2011_vol. 36



신년사·의장 천정숙 04

제6대 제1기 남동구의회 구성현황 06

자유기고 08

만월산 일출을 보며... 08

새해를 맞이하며! 09

남동구의회 회의 운영현황 10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10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14

구정질문 및 답변 22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의원결의 29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

의원연수 및 위원회 활동 30

남동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실시

사회도시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31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꿈을 꿉니다



Message

사랑하는 47만 남동구민 여러분!

희망찬 신묘(辛卯)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가족, 이웃들과 덕담 많이 나누셨는지요? 올 한해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 성취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지난 한 해 우리 의회가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제6대의회가 설레는 출발을 한 지 어느덧 6개월이 지났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14명의 남동구의원 모두가 지역발전과 구민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더불어 사는 사회 구현을 위한 복지 확대, 교육과 문화 인프라 확충, 중견 도시로의 도약을 위한 균형잡힌 도시개발 등 구민의 행복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많이 있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남동구의원 모두는 끊임없이 연구하고 화합하여 남동구의 발전과 구민 편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으며, 겸손한 자세로 구민 여러분의 뜻을 헤아릴 것을 새해 아침을 맞아 굳게 다짐합니다.

Namdong District Council



존경하는 구민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남동구는 인천의 성장, 나아가 대한민국의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신 주거 단지와 잘 보존된 도심 속 청정자연, 인천경제를 주도하는 남동공단, 전국 어느 곳과도 편리하게 통하는 교통 인프라와 더불어 시민들의 자연휴식공간으로 사랑받는 인천대공원과 도심 속 해양천연포구인 소래포구가 있는 매우 매력적인 도시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남동구가 전국에서 가장 살기 좋고 아름다운 도시가 되는 희망찬 꿈을 꿉니다. 하지만 이러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동구 공직자와 의원, 그리고 구민 여러분과의 화합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남동구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창의적인 마인드와 주인의식으로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해 한 걸음씩 나아간다면, 우리 남동구는 반드시 희망이 넘치는 전국 최고 도시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새해에는 구민 여러분께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임을 다시한번 약속드리며, 신묘년 새해 모두에게 환한 미소가 가득한 뜻 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2011년 새해 아침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천정숙**

제6대 제1기 남동구의회 구성 현황

의장



의장 **천정숙**
구월1·4, 남촌도림, 논현, 논현고잔

부의장



부의장 **윤석향**
구월1·4, 남촌도림, 논현, 논현고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한정희**
만수1·4·6, 장수서창



부위원장 **용혜량**
간석3, 만수2·3·5



위원 **조오상**
구월2·3, 간석1·2·4



위원 **이우일**
간석3, 만수2·3·5



위원 **박상준**
만수1·4·6, 장수서창



위원 **김은선**
비례대표



위원장 박인동
구월2·3, 간석1·2·4



부위원장 이우일
간석3, 만수2·3·5



위원 윤석향
구월1·4, 남촌도림, 논현, 논현고잔

총무
위원회



위원 안희태
간석3, 만수2·3·5



위원 한정희
만수1·4·6, 장수서창



위원 김은선
비례대표



위원장 한민수
만수1·4·6, 장수서창



부위원장 박상준
만수1·4·6, 장수서창



위원 박강석
구월1·4, 남촌도림, 논현, 논현고잔

사회도시
위원회



위원 구순희
구월2·3, 간석1·2·4



위원 조오상
구월2·3, 간석1·2·4



위원 용혜량
간석3, 만수2·3·5



위원 서점원
비례대표

만월산 일출을 보며...



안 희 태
남동구의회 의원

2011년 1월 1일 새벽 일출을 보기위해 아이들과 산에 올랐다

지역주민들과 함께 일출을 보면서 한해의 소원을 빌어보는 뜻깊은 시간이었다.

어둠속에서 불끈 솟아오르는 해를 보니 지난 일들이 스쳐지나갔다.

2000년 밀레니엄 일출을 보기위하여 수많은 인파가 유명한 장소를 찾아 떠나는 모습을 TV를 통해 보면서, 시간이 없어 가지 못하는 이웃과 함께 하기위하여, 2001년에는 몇몇이 모여 따뜻한 유자차를 나누며 새해를 설계하는 행사가 간석의용소방대의 주관으로 진행되었고, 1년 동안 산불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과 복을 기원하는 제를 올리고 떡과 음식을 함께 나누는 행사로 발전하였다. 그 후 인주새마을금고의 지속적인 후원과 각 단체들의 도움으로 2011년 신년맞이 행사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많은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큰 행사로 발전하였다.

그동안 도와주셨던 분들께 지면을 통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돌이켜 보면 지난 2010년은 개인에게는 지방선거 재선이라는 기쁨이 있었으나, 사회적으로는 천안함사건, 북한의 연평도 도발,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구제역등으로 우울한 한해였던 것 같다.

이 모든 것을 씻어 버리고 떠오르는 해를 보며 소원을 빌어본다.

2011년 한해는 우리 사회가 조금 더 따뜻해졌으면, 이웃과 더불어 함께 하는 사회 평화의 기운이 넘치는 한반도를 꿈꿔 본다.

개인이 꾸는 꿈은 개꿈이고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희망이라고 한다.

여기 모이신 모든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새해를 맞이하며!

아듀 2010! 호랑이 해, 역시나 맹수인 호랑이는 쉽게 한해를 보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사회에 가장 큰 파장을 일으켰던

① 천안함 침몰사건(3/26) ② 나로호 공중폭발(6/10) ③ 불법 민간사찰(7/27) ④ 외교부장관자녀 특채사건(9/4) ⑤ 김정일 3남 후계체제(9/28) ⑥ G-20 정상회담(11/12) ⑦ 북한 연평도 포격 사건(11/23) 등은 2010년 한해 대한민국 사회를 소용돌이치게 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인천에서도 ① 야권 단일화에 의한 정권 교체 ② 민주노동당의 구청장 2명 배출 ③ 천안함, 연평도사건으로 지역 군인, 민간인 사망 사건 ④ 인천시 재정 악화 등은 올 한해 인천의 이슈였습니다.

저 또한, 어느 해보다도 다사다난했던 2010년이었습니다.

6.2 지방선거를 통하여 구의원에 선출된 후 7월 2일 남동구의회 등원 후 6개월간의 숨 가쁜 의정활동(업무보고, 추경예산안심의 2회, 행정사무감사, 2011년도 예산안 심의)과 각종 행사 참석으로 무척 바빴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병아리 초선의원으로서 좌충우돌하며 보낸 올 한해를 거울삼아 내년에는 더욱더 성숙되고 알찬 한해를 남동구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보낼 것을 다짐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 남동구민과 지역사회 주민들, 특히 저에게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셨던 분들에게 내년 2011년에는 착한 토끼의 해만큼 가정에 만복이 깃드시고, 항상 좋은 일, 즐거운 일, 주머니 또한 넉넉한 경제효과, 건강한 한해가 되시길 마음 깊이 기원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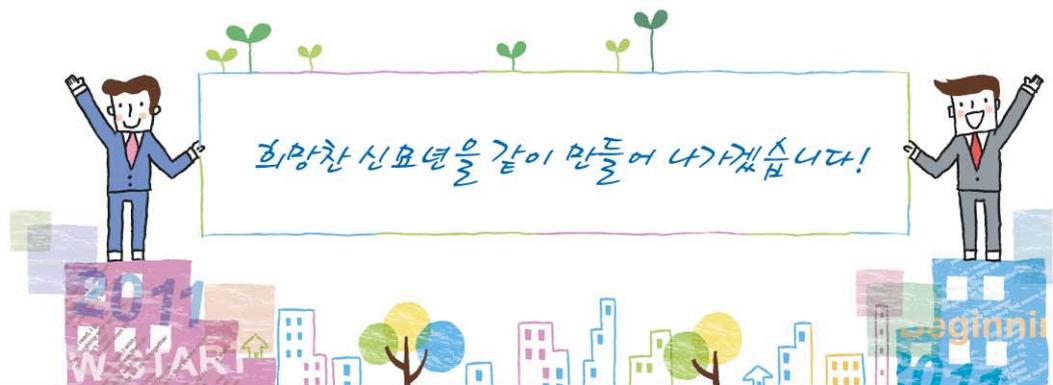
남동구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늘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희망찬 신묘년을 같이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박 상 준
남동구의회 의원



*** 회기운영**

구분	회기별	개회일	폐회일	회기일수
제6대	제187회 임시회	2010. 10. 18	2010. 10. 25	8
	제188회 2차 정례회	2010. 11. 25	2010. 12. 21	27

*** 조례안 및 의안처리**

구분	발의·제출			가결			부결	기타 (보류)
	계	의원	구청장	원안	수정	채택		
조례	계	35	8	27	25	9		1
	소계	23	2	21	15	7		1
	제정	6	1	5	4	2		
	개정	16	1	15	10	5		1
	폐지	1	0	1	1			
기타안건	12	6	6	10	2			

제 187 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천정숙)는 2010년 10월 18일부터 10월 25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책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인수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5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처리하였다.



●● 제187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처리안건

순번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1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승 인
2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인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 택
3	인천광역시남동구청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5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남동구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남동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원안가결
9	제5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원안가결

의회
운영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한정희)에서는 제18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중 제1차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운영 계획안과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협의의 건을 처리하고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인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심사하였다.



▶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인수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채택)**

신도시급 규모로 개발되고 있는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의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설계 내용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와 주민의 요청 내용이 충분히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사전에 방지하고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명칭은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 대상 공공시설물 사전점검·인수 특별위원회」로 하고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심사하였다.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인동)에서는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및 인천광역시남동구청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등 7건을 심사하였다.



▶ **인천광역시남동구청책자문위원구성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우리구의 주요정책 및 현안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의 정책제안이나 자문을 구하고, 구민과의 소통과 통합의 구정을 구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 제1항 30명을 21명으로 수정하고, 안 제8조 제1항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를 “들을 수 있다”로 수정하며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자를 선정·지원하여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 자진납부의식을 고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의 자격요건을 명시하였고, 안 제4조, 대상자별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과 안 제 5조, 성실납세자, 전자납세자, 유공납세자에 대한 지원범위등을 내용으로 하며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국가보훈 수혜의 형평성 차원에서 안 제8조의 수수료 면제대상을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까지 확대하였고, 어선의 등록, 선박국적증서·선적증서 발급 등에 대한 수수료를 농림수산 식품부령 「어선의 등록 등에 관한 수수료 규칙」에 따라 징수하였으나, 동 규칙이 전부 개정되면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사무관리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보완하고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 제1항의 공인의 사용주체에 의결·자문·합의제 기관을 추가하고, 인증기 사용 근거를 명시, 안 제8조에서 전자이미지 공인대상 관리 및 컴퓨터파일 관리주체를 현실에 맞게 구분하고 안 제11조 제2항 공인폐기 시에는 지방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는 내용을 추가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존조례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조례 규정사항이 법령에 이관되어 삭제하는 사항, 도로명주소법령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원안가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 144조 제2항 제2호가 2005년 12월 7일 폐지되고,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설된 후 최소 의무이행기간 5년이 만료됨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제5기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 의료계획안(원안가결)

4년 주기로 수립하기로 되어있는 본 계획은 지역주민의 건강요구에 부응하고 주민건강 향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중점 과제 해결전략으로 출산장려지원 및 모자관리사업과 전염병 관리사업등 2가지를 선정하였고, 개별보건사업계획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등 총 13가지사업을 반영한 계획안으로 제5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서 추진 가능한 최소과제와 추진방향등을 제시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역보건 의료 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구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사회도시
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한민수)에서는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4차의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부서에 대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채택하였다



제 188 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의장 천정숙)는 2010년 11월 25일부터 12월 21일까지 27일간의 일정으로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하였다.

2010년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해 국민의 뜻을 모아 피해자와 그 유족에게 애도와 위로를 표하고, 구의회에 결연한 의지를 담아 국제평화와 한반도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한 북한의 행위를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조례안등 19건의 안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의 예산안을 처리하고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였다.



●● 제188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처리안건

순번	부 의 안 건	심의결과
1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수정가결
3	인천광역시남동구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4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5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6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7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8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	원안가결
9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0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1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2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	원안가결
13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4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15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16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가결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18	논현택지 및 한화지구 소래 · 논현구역 무상귀속 및 기부채납대상 공공시설물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윤석향, 구순희, 조오상 이우일, 한민수, 김은선
19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원안가결
20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원안가결
21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원안가결
2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가결
23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원안가결
24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채 택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한정희)에서는 제187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1차의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 계획안 협의의 건을 처리하였고, 제188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의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의회사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예산안 및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심의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조례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규칙안 제49조와 제59조 제3항의 “간사”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 3건 : 개선 1건, 건의 2건)

○ 의회사무국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개선 및 통일로 일목요연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망등 개선 1건과, 타시도 비교시찰을 통해 우수사례를 벤치 마킹하고 우리 구 현실에 접목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비교시찰을 실시할 것등 건의 2건.

총무위원회

총무위원회(위원장 박인동)에서는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0차의 총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3건의 안건과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표창을 받은 모범공무원의 특별 승진을 위해 관련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행정안전부 특별승진 임용 실행 지침에 의거 총정원의 변동 없이 별표 2의 기능직공무원란 중 6급을 1% 증원하고 7급을 1% 감원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수정가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 하고 재정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예산편성에 있어 주민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실행하고자 하는데 의미를 두어 안 제20조 제항 “30명”을 “10명”으로 안 제28조 제항 “20명”을 “10명”으로 수정하여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조례」와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하여 구민의 문화육구 충족과 효율적인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법제처 기준 알기 쉬운 용어로 정비하였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미술장식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현행 조례를 인용하였고, 미술품 구입 및 관리, 축제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례로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변화된 행정 환경에 맞추어 공무원 선서문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특수경력직 공무원 연가 가산 가능 경력 규정과 연가일수 공제 사유를 추가하고 그 밖의 미비 사항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현행조례 제7조의 2 “5만원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직수당을 지급한다”로 수정하여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만수2동과 만수3동 2개의 행정운영동으로 나누어져 있는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의 행정운영동을 만수2동으로 일원화하여 행정구역에 대한 혼란을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사항과 2008년 3월 21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었으나 당시 정리지되지 못한 장수서창동 일부를 만수1동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주민복지증진과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강화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사용료와 수강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안 제17조 제3항, 제7항, 안 제20조 제1항, 제2항, 안 제23조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고문”으로 한다”로 수정하여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나날이 증가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코자 하는 사항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지원에 관한 사업등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원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기본조례안(원안가결)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3개의 법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구세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행정안전부 조례 표준안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현행 「지방세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3개의 법으로 나누어지고, 「지방세법」전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과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행정안전부 표준조례안 등을 감안하여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세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10년 12월 31일 적용시한이 만료되는 현행 구세감면 조례 중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감면사항은 2011년 1월 1일부터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 규정됨에 따라 수혜범위가 지역에 한정되어 이관 제외된 감면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따라 감면기한을 2011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 운영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단순·교부민원 수수료 항목을 관련 규정에 맞게 개정하고,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재산세 과세특례 대상지역 고시안(원안가결)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지방세법」 제104조 제6호에 따라 재산세과세특례 대상지역을 고시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에 근거하여 남동구 전지역에 해당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으로 원안가결함.

▶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원안가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이 소요되는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가칭 남동문화예술회관 기부채납의 건 등 4건으로, 신축 및 시설 설치·매입의 필요성이 공감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함.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 32건 : 개선 19건, 건의 13건)

기 획 감 사 실 : 팔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편성 취지에 맞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가급적 수요를 미리 예측하여 예산에 편성 후 집행 등 개선 5건, 건의 1건

문 화 흥 보 실 :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운영 시 여러 지역 주민이 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에서 확대 운영 등 건의 1건

총 무 과 : 각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중복을 막고, 단체별 상호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지역 이기주의를 없애고 구민 화합을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등 개선 4건, 건의 3건

경 영 재 정 과 : 국공유지 관리 철저로 무단점유 사례 최소화에 노력등 건의 1건

재난안전관리과 : 방재시설 관리 및 침수지역에 대한 예방대책 마련으로 폭우, 폭설등 자연재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 최소화 등 개선 1건, 건의 2건

세 무 1 과 :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마련으로 세원누락 최소화 및 체납액 관리에 철저등 개선 3건

세 무 2 과 : 누락세원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 간 대책회의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각종 결과보고서 작성 시에는 수치화·계량화 하여 객관적인 자료 제공 등 개선건, 건의 1건

토 지 정 보 과 : 새주소 사업 시행에 대한 홍보로 시민 불편 최소화에 노력등 건의 1건

보 건 행 정 과 : 방역소독 후 소독장비 보관 및 관리에 철저등 개선건, 건의 2건

건 강 증 진 과 :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민간위탁사업 및 지역사회건강조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가시적인 투자 성과를 위해 사업비 정산 및 운영 관리에 철저등 개선 2건

도시관리공단 : 도시관리공단 운영 시 공공성과 수익성의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고, 적자가 발생치 않도록 운영방법 개선등 개선2건, 건의 1건

사회도시 위원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한민수)에서는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27일간) 소관부서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조례안 심사,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 하였다.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가결)

남동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 구성 및 임기, 해촉 사유를 명문화 하고,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자격 및 기존 위원의 신분변동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재구성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며, 우리구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문맥상 일관성을 기하는 부분을 수정하여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안가결)

본 조례안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근거로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교육경비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을 명문화하고, 혁신학교 육성 지원 확대 등 구민의 교육수요에 대해 신속한 대처와 공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교육발전에 적극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전통상업보존지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수정가결)

본 조례안은 지역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외에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도 등록제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가결됨에 따라 동법률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함.

▶ 인천광역시 남동구 공원운동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국가를 위하여 헌신한 개인 및 유족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며 국민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운동장 사용 예약 후 잦은 취소로 인한 선의의 실제 이용자의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선진예약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가결함.

▶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총 48건 : 시정7건, 개선 2건, 건의 39건)

주민생활지원과 : 종합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등 시정3건, 건의 1건

주 민 복 지 과 : 생활안정기금 체납정리 방안 마련 적극 조치등 건의4건

여 성 아 동 과 : 보육시설 지도점검 강화 및 철저한 관리로 시설운영자들의 부정행위 근절 당부 등 건의 5건

청 소 과 : 음식물폐기물 공공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다각적인 검토로, 효율적인 추진등 건의 4건

환 경 과 :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 징수 조치 방안 마련으로 체납율 최소화등 시정1건, 건의 5건

위 생 과 : 모범음식점의 사후관리 철저 등 건의 3건

지 역 경 제 과 : 길거리 유사석유판매행위 단속 철저등 시정3건, 건의3건

건 설 과 : 인도정비공사의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시공 방지등 개선1건, 건의3건

건 축 과 : 로데오거리등의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한 단속 강화에 대한 건의 1건

도 시 정 비 과 : 관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철저등 건의 2건

교 통 행 정 과 : 기계식주차장의 실질적 역할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등 개선1건, 건의4건

자동차관리과 : 사업용차량의 차고지 증명제도 현실화를 위한 대안마련 및 화물자동차 주차차 단속 철저등 건의 1건

도 시 개 발 과 : 구월보금자리주택 조성으로 당초 계획중 취소된 사항들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에 정확한 남동구의 입장을 전달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 마련 추진등 건의 2건

공 단 출 장 소 : 관내 중소기업의 특허출원 지원사업에 따른 사후관리 만전등 건의 1건 등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88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중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심사를 위하여 용혜랑의원, 이우일의원, 박상준의원, 박강석의원, 한민수의원, 한정희의원, 김은선의원 등 총7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제2차에 걸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박강석의원, 부위원장에 김은선의원을 선임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으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

▶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원안가결)

2010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에서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최종목표액 확정과 국·시비 보조금 등의 변동에 따른 내시액 정리사항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집행잔액 정리, 필수경비로서의 인건비 등 부족분 계상, 국·시비 보조에 따른 사업비 반영 등 2010년도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필수적인 사항만이 반영된 안으로 판단, 원안가결하였다

▶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수정가결)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일반회계 세출에서 5개 부서1,077,061천원과 특별회계 세출에서 110,630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치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사업에 필요한 필수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원안가결)

특정한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과 별도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기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개별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 실정에 맞게 자금운용계획을 반영하여 기금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원안대로 심사하였다.



구정 질문 · 답변 | 제188회 제2차 정례회



한민수 의원 (만수1·4·6, 장수서청)



- ▶ 소래포구 어시장의 전대점포 현황 및 처리대책 요구
- ▶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거래 질서 확립 및 시장의 체질개선 방안

■ 소래포구 어시장의 임대점포 중 계약자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전대점포 현황 및 이들 전대점포에 대한 처리대책 요구

■ 소래포구 어시장의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시장의 체질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와 있다면 그 처리대책 및 방안 요구

▣ 구청장 답변

■ 국유재산법에 따라 금년에는 총 331명과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법에 의거 전대행위는 금지되고 전대 행위 적발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자들이 이러한 처분에 대하여 잘 알고 계약내용을 이행하고 있으나 직접 영업이 어려운 노약자 및 일부 비양심적인 임대자들의 전대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 되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이러한 전대행위 방지를 위해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전대자와 실제 종업원과의 구분이 어렵고 상인간의 내부적인 관계 등으로 인하여 전대사실 확인에 한계가 있음.

최근 우리 구에서는 사업자등록증을 통해 전대사실을 확인코자 세무서에 관련 자료를 요청하였으나 순수한 과세사무에 필요한 경우에만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현재까지 자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어시장 전대사실에 대하여는 확실한 물증 없이 심증만으로는 행정처분이 어려운 상황이며 입증자료 없이 전대 행위에 따른 계약 해지 시 행정 및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전대행위에 대한 적발과 처분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음. 관련 사례로 지난 2009년도에는 어시장내 전대 계약자 당사자간의 계약 연장 문제로 민원신고된 전대계약서의 증거물을 확인하여 대부계약 해지를 한 바 있으나 이에 대해서조차 부당하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음.

따라서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상인 스스로 불법전대 행위를 금지토록 지속적인 홍보추진 및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유지와 물증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불법 전대

계약자에게 경종을 울리고 전대계약을 방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국적인 관광명소로서의 명성을 이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소래포구는 수도권 천혜의 관광명소로 각종 볼거리와 싱싱한 수산물을 제공하는 자연 발생적 포구이나 개발 제한구역으로 인한 낙후된 시설과 일부 상인들의 상거래질서 문란 행위 등으로 어시장을 찾는 소비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우리 구에서는 소래 어시장의 상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모든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과 지속적인 불법 호객행위 단속과 일부 상인들의 비양심적인 저울 속임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시장 내에 양심 저울을 설치하였으며, 상인들의 의식개선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의 지원을 받아 고객 친절 교육 및 경영마케팅 등 맞춤형 전문교육을 실시하였고 소래포구 상인들을 중심으로 소비자보호센터를 구성하여 소비자 불만 사례가 없도록 자구 노력도 강구하고 있음.

아울러 낙후된 소래어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위해 관련 부서장들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그린벨트 해제 및 국유지 활용방안과 시장등록을 통한 시설현대사업 추진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어시장 상인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음.



이우일 의원 (간석3, 만수2·3·5)

- ▶ **구민생활체육대회 폐지 및 예산삭감 관련**
- ▶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확대 관련**



■ **구민생활체육대회 폐지 및 예산삭감 관련**

-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를 위배하여 구민생활 체육대회 폐지 및 예산삭감과 삭감된 예산이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에 위배하여 체육진흥협의회와의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대회 예산삭감 및 폐지 사유 설명 요구

- 구민생활체육대회 예산을 살려 운영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구민회합과 소통의 장이 되리라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구청장의 의지 표명 요구

■ 스포츠바우처 시범사업 확대 관련

- 기간별 이용대상자의 증감폭이 크므로 수요폭증에 대한 대책 및 출석관리, 안전대책과 바우처 대상자들의 신상 정보 관리 철저 및 스포츠용품 바우처의 경우 소외계층 청소년들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지도 있는 브랜드 제품 구매 및 프로그램 다양화 요구
- 복지사각지대의 청소년을 위하여 학교실내체육관을 이용하여 생활체육협의회 등과 연계하여 사업추진 의지 타진
- 스포츠바우처 종목 시설 확대 및 셔틀버스 운행 등 사업확대 의지 타진

□ 구청장 답변

- 구민생활 체육대회는 별다른 구민행사가 없었던 시기에 구민 회합에 큰 역할을 해왔으나 대회를 거듭할수록 과열 경쟁과 선거법 시비 등으로 인한 불협화음 및 군중 동원식 특정인들만의 행사로 비난의 대상이 된 것도 사실임. 따라서 구민을 위한 진정한 체육진흥은 우리 구민들이 일상에서 체육을 보다 쉽게 접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의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하고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임.
향후 구민의 소통과 회합을 위해 필요한 체육대회는 대규모 행사중심이 아닌 무리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안을 모색토록 하겠음.
아울러 동별 체육진흥협의회는 남동구 체육회 회칙에 의한 동 단위 조직으로, 체육 진흥법 및 남동구 조례에 의해 설치된 자문기구인 남동구 체육진흥협의회와는 서로 다른 조직이며, 개별적인 체육행사의 개최여부는 남동구 체육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의 협의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음. 종합체육대회의 폐지는 환경의 변화와 여론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였음.
- 스포츠 바우처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시범사업 기간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이후 본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임. 희망하는 종목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시설과 지역편중 및 예산부족, 운영경험 미숙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우선 운영과정에서 제기되는 개인정보 유출 등 신상관리, 수강생의 출석관리 및 강사와 지도자의 책임강화, 계절적인 수요증가 대책과 함께 바우처 수강생이 시설이용과 물품구입에 있어 위화감을 느끼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도를 하여 개선토록 하겠으며, 다양한 사회계층에 대한 참여와 다양한 종목에 대한 바우처 사업의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있음. 부족한 예산과 체육시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

시설과 민간 체육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자 체육단체와의 연계방안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의원님의 의견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음.



박상준 의원 (만수·4·6, 장수서청)



- ▶ 예산 편성의 적정성 요구
- ▶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해소 대책
- ▶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 예산 편성의 적정성 요구

- 일부 부서에 편중된 과도한 예산편성으로 인한 불용액 발생과 그로 인한 타부서 사업시행 지연 및 국시비 보조금 지급시기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구비 동반 적체 문제 해소와 전년도 예산에 준한 일률적인 예산편성에 대한 개선 방안 요구

■ 사유재산권 행사제한 해소 대책

- 도로 등 기반시설 확충이후 그린벨트 해제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권리행사에 지장을 초래 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 및 남동구 그린벨트 현황 공개 요구

■ 수의계약 문제점에 대한 개선 대책

- 일부 업체에 편중된 수의계약 체결 및 수의계약 요건에 근접한 금액에 체결되는 사업이 다수를 차지하므로 그에 대한 개선방안 요구

▣ 구청장 답변

- 전체 예산 중 사회복지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해 38%에서 금년에는 42%로 올라갔고, 내년에는 48%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이는 3개부서의 예산이 전체 예산의 절반에 육박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사회복지 예산의 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전국적 공통사항이라고 할 수 있음. 국·시비 보조금 증가에 비례하여 구비 부담도 증가하게 되어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있으며, 국·시비 보조금이 제때 교부되지 않아 차질을 빚기도 하였음.
또한 예산편성 시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예산 구조를 조정하고 경상경비 및 행사·축제성

예산을 최대한 절감 편성하고자 하였으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나 공공운영비 등에서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 지체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워 내년으로 이월되기도 하였고, 여건 변동에 따라 추진이 중단되는 사업도 있었음

그러나 내년도 우리 구의 수송 및 교통 지역개발 분야 예산은 시비보조금이 대폭 축소되면서 감소했으나, 이는 시의 재정운용 방침에 의한 것이며 이와는 별개로 우리 구에서는 일부 부서에 편중된 예산편성으로 타 부서에 꼭 필요한 사업시행을 어렵게 하는 일은 없었음.

향후 재원이 많이 소요되는 기반시설 조성 사업 등에 대하여는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구 부담을 가능한 경감하는 방향에서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이월액이나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법령과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이라면 반드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남동구내 그린벨트 면적은 24,22km²로 전체 행정면적인 56.85km²의 42.6%에 해당되며 동별 그린벨트 현황으로는 장수·서창동이 10.14km² 남촌·도림동이 8.18km²로 전체의 76%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린벨트의 지정 및 해제는 국토해양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토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음.

그동안 해제된 지역으로는 2006년 6월 구월동 760번지 일원을 비롯한 15개 집단취락지구 등이 있으며, 현재 택지



개발사업 및 아시안게임 경기장 조성 등으로 도시계획 사업 시행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해제되고 있는 실정임. 그린벨트 해제지구의 기반시설 확충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추진해 나가고 있으나 집단취락지구로 해제된 15개 지구는 구의 재정 형편상 시비 보조를 받아 사업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관계로 현재 여건상 시비 지원이 여의치 않아 사업추진이 부진한 실정임.

아울러 그린벨트가 해제되지 않은 지역 중 비교적 취락률이 높은 도림 2지구와 도림 3지구에 국토해양부로부터 주민지원사업비 52억원을 지원받아 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시비 확보 등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음.

- 2010년도 공사와 용역에 대한 총 계약건수 715건 중 공개경쟁입찰이 199건, 수의 계약이 516건으로 총 사업 건수 대비 수의계약이 72%로 높은 비율로 보이고 있으나, 이를 금액으로 살펴보면 총 사업예산은 415억 7,700만원이고 공개경쟁입찰이 357억 2,400만원으로 전체의 86%에 해당되며, 수의계약은 58억 5,300만원으로

사업예산 총액대비 14%에 해당되므로 공사에 대한 대부분의 예산은 공개경쟁입찰과 관련된 사업예산임.
 2010년도 수의계약에 대한 사업은 연간 5회 계약을 한 사업체가 2건, 2회 이상 사업체는 19건으로 대부분 많은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 훈령인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계약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나, 향후 지적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업체의 불만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업무를 맑고
 투명하게 수행토록 하겠음. 아울러 사업부서의 공사를 설계할 때 건설품셈을 엄격히 적용하여 공개경쟁입찰
 대상공사를 수의계약 대상 공사로 설계하는 사례가 없도록 설계심사를 철저히 하겠음.



윤석향 의원 (구월1·4, 남촌도림, 논현교산)



- ▶ 소래포구 환경정비 요구
-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요구
- ▶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원 증원방안 요구

■ 소래포구 환경정비 요구

- 소래어시장과 소래포구 일원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정비와 적법한 건축물을 갖춘 정식 시장으로 등록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소래지역 개발 계획과 병행하여 소래포구지역을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방안 요구

■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방안 요구

- 현재 계획 중인 도림근린공원과 이미 조성된 남동 근린공원 소래습지 생태공원과 구월동, 남촌동, 도림동, 수산동, 논현동, 장수동에 이르는 개발제한구역에 대해 체육 시설과 시민의 숲 등 다양한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개발하여 남동구만의 센트럴파크로 조성하는 계획에 대한 구청장의 의향 타진

■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정원 증원방안 요구

- 남동구 인구수 대비 공무원 정원부족으로 직원 근무환경 열악 및 구민들은 양질의 행정서비스 받을 권리 침해의 우려가 있으니, 정원증원 방안 요구

▣ 구청장 답변

- 우리 구에서는 소래포구 및 배후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해 금년 3차례 주민공람을 거쳐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금번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금년 10월초 인천시에 신청하였음.

현재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 심의가 지연됨에 따라 금년 안에 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 심의 상정 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적극 협의 중에 있으며, 내년도 상반기 소래구역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면 도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소래구역 배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음.

-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등 휴식공간의 확충은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라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취지에도 부합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됨

이에 우리 구에서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내 도림동 412번지 일원에 주적체육공원과 도림동 산4-2번지 일원에 도림근린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천대공원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까지 약 8킬로미터 구간에 누리길 조성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영동고속도로와 소래습지생태공원 사이의 논현동 33번지 일원 약 7만평에 공원을 조성하고자 인천시 도시 기본계획에 공원반영을 건의하고 있는 등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사유 재산권 제약에 따른 토지주들의 애로사항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의 보다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인천시 및 국토해양부와 지속적으로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조성 및 산책로 연계 등 시민의 건전한 휴게 공간 확충에 더욱 노력하겠음.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인 대통령령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자치 단체의 정원 기준인 총액인건비를 결정하여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008년도 기준정원 산정 시, 재건축 사업으로 일시적인 인구 감소가 일어났던 2002년부터 2006년까지의 기간이 반영되어 정원 감축이 요구 되었음.

재개발 사업과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이후 인구가 50만에 육박하고 특수 복지수요 계층이 증가하는 등의 변화된 행정여건이 적절하게 반영되지 못하고 우리 구 행정규모에 비하여 적은 정원이 반복적으로 책정되고 있는 실정임.

그간 이러한 문제점을 바로잡기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장관과 지방행정 국장 등을 직접 면담하며 증원을 요청하였으나, 현재까지 행정안전부에서는 참고하겠다는 일관적인 답변만 주고 있는 실정임.

2011년도 예비정원 산정결과 우리 구 요청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행정안전부를 직접 방문 하는 등 우리 구 행정규모에 적합한 정원을 확보하여 구민이 만족 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 구현에 노력하겠음.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에 대한 규탄 결의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사건과 우라늄 분리시설 공개에 이은 연평도 무력도발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희생된 순국 용사들과 그 유족들에게 깊은 弔意(조의)와 애도를 표하고, 부상자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북한은 스스로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 동포를 향해 포격하여 국제적 범죄를 저지름으로써 한반도 긴장과 갈등을 고조시키는 평화 파괴세력임을 만천하에 확인시켰다



이에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북한의 군사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정부는 추가 도발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과 신속한 피해 복구, 국제적 인식공유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력히 촉구하며, 희생자 유족의 비통한 심정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로 희생된 2인의 순국 용사와 2인의 민간인, 그리고 20여명의 중경상을 입은 국군장병 및 연평도 주민과 그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를 표한다.
2. 연평도 민간인 거주지역 무력도발은 停戰(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유엔헌장을 위반한 명백한 군사도발 행위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북한의 진심어린 사죄와 책임자 처벌, 배상 그리고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요구한다.
3. 정부는 국민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하며 남북평화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4. 정부는 국가 안보태세를 재확립하고 위기관리시스템을 전면 재점검하기를 촉구하며, 연평도 무력도발행위는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그리고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인지하여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실효성 있고 긴밀한 국제공조 추진을 촉구한다.
5.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46만 남동구민과 더불어 일치되고 단합된 대처가 가능하도록 많은 바 임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다.

2010년 11월 25일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대표발의 조오상, 윤석향, 천정숙, 박인동, 이우일, 한민수, 김은선, 서점원)



남동구의회 의원 해외연수 실시



남동구의회(의원 7명)에서는 2010. 11. 4일부터 11. 13일 기간 중 8박 10일의 일정으로 선진 우수사례 연구와 지방의원으로서의 국제적 안목과 의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호주, 뉴질랜드에 대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다.

연수 기간 중 호주 시드니의 캔터베리시의회를 방문하고,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 위치하고 있는 헤글리 공원과 밀포드사운드 등 천혜의 자연자원을 돌아보았으며, 그곳의 사회복지시설 및 마우리족의 전통문화등 다양한 이문화 체험의 기회를 가졌다. 우리나라와는 정반대의 땅, 기후 등 사뭇 다른 호주에 도착하여 풍부한 자원과 Clean, Green, Welfare의 상징국으로서 우수성과, 원주민인 마오리족과는 타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성숙된 문화와 응집된 잠재력 등을 관찰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 된다.

우리 남동구도 소래포구와 생태공원이라는 값진 자원이 있다.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가장 자연과 비슷한 모습을 유지하여 바다, 포구, 염전의 모습을 즐길 수 있는 관광사업을 추진하면 도시와 멀지 않는 곳에서 더욱 친근하게 자연을 만끽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본다.

연수를 계기로 일상에서의 활력소와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지방의원으로서의 책임감을 다시 한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한민수)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2박3일에 걸쳐 경기 연천, 강릉, 정선 등의 비교시찰을 하였다.

경기 연천군에서는 우리구 현안사항인 음식물자원화시설 건립·운동을 앞두고 타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음식물자원화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운영상의 장·단점을 알아보고 향후, 집행부의 동 사업 추진시 최적의 시설 설비·운영 방향 제시를 기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강릉에서는 수산물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강릉시의 각종 사업 추진 성과를 벤치 마킹하여 우리구 관내의 각 재래시장에도 도입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접목시켜 활기찬 재래시장 분위기 조성 및 지역특화사업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서민경제에 활기를 북돋고자 하였고, 정선에서는 지금은 폐광이 되어 버린 자원과 천혜의 자연 경관등을 지역관광 자원으로 개발하여 관광수입 증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가장 지역적인 것이 가장 경쟁력 있는 자원이라는 대전제에 더욱 깊은 공감대를 형성 하면서, 우리구 제일의 관광자원인 소래포구와 연계한 우리구만의 차별화된 관광프로그램 개발로 관광문화 인프라 구축에 힘쓸 것을 제시하며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쳤다.



사진으로 보는 의정 이모저모



2010 남동구의원 의정연수



2010 남동구의원 의정연수

● 2010 남동구의원 의정연수 실시
2010. 9.28일부터 9.30일 기간 중
6대 의회개원에 따른 의원 의정연수에
참여하였다.

● 제10회 인천소래포구축제 참여

인천소래포구축제 개회 퍼레이드에 참여하여
성공적인 축제를 기원하였다.



제10회 인천소래포구 축제



제10회 인천소래포구 축제

● 제8회 남동구민 건강마라톤대회 참가

인천소래포구축제의 사전분위기 조성과 구민체육
활성화를 위한 남동구민 건강마라톤대회 참가.



제8회 남동구민 건강마라톤대회

남동구의회 방청안내

“남동구의회 의정활동은 구민들께서 직접 방청하실 수 있습니다.”

■ 방청을 하시려면

- 개인 : 회기중 의회사무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이 가능하며 방청권은 당일 배부해 드립니다.
- 단체 :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방청협의(단체는 20인이상)
- 방청안내 : 032-453-5040

■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회의규칙 제80조)

-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
-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
-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
- 음식물의 섭취나 깍연행위
- 신문 기타 서류의 열독행위
-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
-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
- 기타 소란 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의회용어 알아보기

- **결의안** : 지방의회는 지방의원, 단체장으로부터 조례안, 예산안, 결산, 건의안 등의 형태로 의안이 발의·제출되는데 이를 제외하고 지방의원이나 위원회가 당해 의사결정을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결의안이라 한다. 내용은 지방의회 내부운영, 지방의회 의사를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사항이며, 내부적인 사항은 의회 자체내에서 구속력을 가지나, 외부기관과 관련된 사항은 법적구속력이 없는 의견표시에 불과하다.
- **건의안** :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 및 외부기관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를 하기 위한 것으로, 재적의원 1/5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 발의하거나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의안을 말한다.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건의내용을 소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외 적정한 기관(국회 또는 중앙행정기관 등)에 이송하게 된다.